

#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11월 30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2022년 ‘서울특별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’에서 심의·의결한 ‘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 내역’에 따라 2023년도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“4,044,620원”에서 “4,101,240원”으로 변경함([별표 2]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약 7,610만 원(월 56,620원×12개월×112명) 추가 소요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월정수당의 지급액란 “4,044,620원”을 “4,101,24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								
<p>[별표 2]</p> <p>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70%; 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정수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4,044,620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지급액	월정수당	<u>4,044,620원</u>	<p>[별표 2]</p> <p>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70%; 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정수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4,101,240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지급액	월정수당	<u>4,101,240원</u>
구분	지급액								
월정수당	<u>4,044,620원</u>								
구분	지급액								
월정수당	<u>4,101,240원</u>								